

# 협동조합 실무자들을 위한 7월 Check point



유有 휴休 무無 언言

: 휴가를 떠나는 자에게는  
어떤 이유도 필요없다

©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관광공사

## 협동조합, All about 연차유급휴가 발생과 사용

노무법인  
의연

사회적경제로 向하는 전문가 공동체

# 1. Intro



<인사담당자 김인사씨>

우리 협동조합에서는 근로자들이  
휴식을 가지며 일하길 바랍니다.  
그런데 연차휴가제도가 너무 어려워요.  
연차휴가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 
사용할 수 있나요?, 연차휴가일에 근무하면  
가산수당이 발생하나요?  
뉴스레터에서 연차휴가에 대해  
자세히 알려주세요!

**근로기준법 상 법정휴가인 연차유급휴가는  
발생에서부터 사용까지  
실무적으로 다양한 이슈가 있습니다.  
7월의 체크포인트에서는 연차휴가에 대해  
자세하게 알아보고 Q&A를 통해  
다양한 법적 쟁점에 대해  
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.**

## 2. 연차유급휴가란?

# 연차휴가 = 법정 & 유급 & 휴가

### (1) 의의

- 1년을 단위로 하여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정신적·육체적 휴양을 제공하여 노동의 재생산을 도모하고,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양립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(대법 1996.6.11 선고 95누6649판결).

### (2) 법정휴가

- 연차휴가는 근로기준'법'으로 '정'한 '휴가'로써 단체협약·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약정휴가와 구별됩니다.

### ※ 적용 제외

- 연차휴가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협동조합과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(초단시간 근로자)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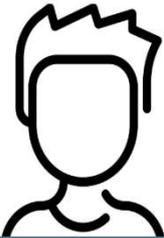
or



## 2. 연차유급휴가란?

### (3) 휴가

- 휴가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(소정근로일)에 그 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
- 즉,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.
- 이와 달리 휴일은 '근로제공의무 자체가 없는 날'로 휴가와 구별됩니다(근로기준과-1186, 1999.12.15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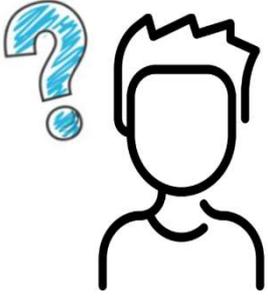


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?

- 휴일은 원래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.
- 2021.1.1.부터 상시 30인 이상 협동조합에서는 관공서 공휴일이 법정휴일로 적용되므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.
- 단, 공휴일을 법정휴일로 적용 받지 않은 협동조합\*에서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로써 공휴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해당일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.

\* 상시 5인 이상 30인 미만 협동조합은 2022.1.1.부터 공휴일을 법정휴일로 적용 받습니다.

## 2. 연차유급휴가란?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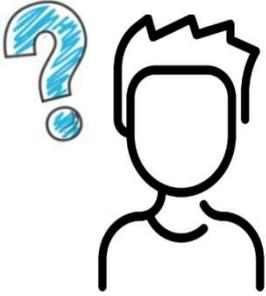
직원이 연차휴가 사용일에  
출근 했습니다.  
휴일근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까요?

-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하지만 연차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 휴가일은 원래의 근무일이 되므로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 따라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 단, 연차휴가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.

### (4) 유급휴가

- 연차휴가는 '유급' 휴가이므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임금의 감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.
-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한 달의 월급액은 근로를 제공한 것과 동일하게 지급해야 합니다.
-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일에 지급되는 시급, 일급만큼의 임금이 연차휴가일에 대해 지급되어야 합니다.

## 2. 연차유급휴가란?



직원A의 연차휴가 사용기간(예. 7.5~7.7) 중  
코로나 19로 인한 협동조합 건물 폐쇄로  
직원 전체가 휴무(예.7.6)한 경우  
직원 A는 연차휴가를 사용(예.7.6)한 것으로  
보아야 할까요?

- 고용노동부(법무 811-12807, 1979.5.29)는 법령,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정해진 유급휴일은 연차유급휴가와와는 별개의 것이므로 연차유급휴가 기간 중에 이러한 유급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을 제외하고 소정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.
- 이와 달리 무급휴일로 정하거나 휴일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날을 포함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주면 된다는 입장입니다.
- 따라서 해당 사례의 경우 코로나19로 직원들에게 휴무하게 한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였는지 무급으로 처리하였는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만약, 예시의 7.6 휴무일이 유급휴일이었다면 직원 A의 연차휴가일수에서 7.6은 제외하여야 합니다.
- 반대로 7.6 휴무일이 무급휴일이었다면 직원 A의 연차휴가일수에 포함하여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.

### 3. 연차유급휴가일수의 산정

#### (1).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

- 1년 미만인 근로자란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입사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뿐만 아니라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.

산정 방법 :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 발생



최대 11일 발생



지각한 경우도  
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할까요?

- 개근이란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
- 즉, 지각이나 조퇴가 있더라도 출근하였다면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요(근기 1451-21279, 1984.10.20)

### 3. 연차유급휴가일수의 산정

#### (2).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

-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출근율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 일수를 산정합니다.
-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1년간 출근율이 80%미만인 경우 1년 미만 근로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연차 휴가발생일수를 산정합니다.

산정 방법 : 1년간 출근율 80% 이상 충족시 연차휴가 발생

- 출근율이란 1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대한 소정근로일 중 출근한 일수를 의미합니다.

$$\text{출근율(\%)} = \frac{\text{1년 소정근로일 중 출근한 일수}}{\text{1년 간 소정근로일}}$$

2021년  
1월 1일  
입사자

1년간(2021.1.1~2021.12.31) 80% 이상 출근 O

계속근로기간  
1년 미만

계속근로기간  
1년 이상

2022년 1월 1일  
15일 연차 발생

### 3. 연차유급휴가일수의 산정

#### (3). 가산휴가일수

- 협동조합에서는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직원에게는 기본휴가일수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.

산정 방법 : 기본 15일 + (근속연수-1)/2(소수점 이하 버림)

- 입사일부터 3년 근무한 경우
  - $N=3$ , 연차휴가일수 =  $15 + (3-1)/2 = 16$ 일 발생
- 입사일부터 10년 7개월 근무한 경우
  - $N=10$ , 연차휴가일수 =  $15 + (10-1)/2 = 19$ 일 발생
- 입사일로부터 23년 3개월 근무한 경우
  - $N=10$ , 연차휴가일수 =  $15 + (23-1)/2 = 26$ 일 → 25일\* 발생
  - \* 가산휴가일수 최대 한도는 25일



최소 15일 ~ 최대 25일

## 4. 연차유급휴가 사용 방법

### (1) 연차휴가 사용 시기

-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따라서 근로자는 휴가일을 정하여 협동조합에 신청함으로써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### (2) 연차휴가 신청 절차

-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휴가 신청 방법에 대하여 별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따라서 협동조합에서는 내부적으로 취업규칙 등을 통해 연차휴가 신청 절차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.

#### <취업규칙 예시>

##### 제00조(연차유급휴가의 사용)

제1항 직원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 7일 전에 휴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협동조합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2항 협동조합은 직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으로 인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.

## 4. 연차유급휴가 사용 방법



직원들이 연차휴가를 통해 여름휴가를 가려고 하는데 특정시기에 집중 되어있네요.  
협동조합에서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 할 수 있을까요?

### (3) 연차휴가 시기변경권

- 앞서 살펴보았듯이 원칙적으로는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.
- 다만, 예외적으로 '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'에는 협동조합에서 휴가사용의 시기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.
-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는 것은 직원의 담당 업무의 성질, 바쁜 정도, 대체 난이도, 같은 시기에 휴가 청구자 수 등 상황에 따라 구체적,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.
- 다만, 직원들의 휴가청구일이 집중되는 경우, 직원들의 휴직, 병가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인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(근기 68207-2062, 2001. 6.28)
-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자와 합의하여 시기를 조정할 수 있되 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에 위반됩니다.

## 4. 연차유급휴가 사용 방법

### (4) 연차휴가 반일 사용

- 연차휴가는 '1일'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직원의 청구에 따라 '1일'을 분할하여 사용하도록 승인할 수 있습니다(근기 68207-934, 2003.7.23).
- 단, 반일 시간 단위 연차휴가제도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을 통해 반일에 대한 시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

#### <취업규칙 예시>

##### 제00조(연차반일휴가제)

제1항 직원이 희망하는 경우 오전(09:00~13:00), 오후(14:00~18:00)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.

제2항 반일휴가 2회 사용은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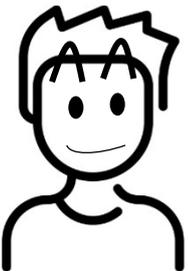
제3항 반일휴가 사용 절차는 제00조 연차휴가 사용 절차에 따른다.

## 5. 7월의 Check point 마무리

번호	Check point	응답	비고
1	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협동조합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지?	네	근로기준법 상 연차유급휴가제도 적용
		아니오	근로기준법 상 연차유급휴가제도 미적용
2	협동조합에서 직원의 연차휴가일을 지정하고 사용하도록 강제하였는지?	네	근로기준법 위반
		아니오	근로기준법 준수
3	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직원과 합의를 통해 연차휴가 사용일을 변경·사용하도록 하였는지?	네	근로기준법 준수
		아니오	근로기준법 위반

## 6. Outro

연차휴가 기본 개념, 발생 요건에서부터  
사용까지 상세하게 배웠습니다!  
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상으로  
5인 이상 협동조합에게 발생하되 주 15시간  
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네요!  
연차휴가 사용 절차에 관해서도 취업규칙,  
내부 지침을 통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 
협동조합에서 연차휴가 사용을  
활성화 해야겠어요!



<인사담당자 김인사씨>

※ 연차휴가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은 협동조합 홈페이지  
([www.coop.go.kr](http://www.coop.go.kr)) 상시상담 게시판을 통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☺.

감사합니다